

제19대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임시회의 개최 계획

〈 관련 규정 〉

- **해양경찰법 제11조(해양경찰청장)** ② 해양경찰청장은 **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**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**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5조(회의)**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3명 이상의 위원, **해양수산부장관**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**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**

일시·장소 : '23. 1. 3.(화) 09:00 ~ ,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

※ 회의 방식: **비대면 화상회의**

참석 대상

○ (위원회)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총 7명

○ (해수부) 해수부장관

○ (해경청) 해양경찰청장 후보자, 기획조정관, 기획재정·인사담당관 총 4명

상정 안건

○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해양수산부 제출

* 의결 : 재적위원 과반수(4명 이상)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(法 제10조)